

2025
6.3대통령선거
여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

2025.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s

Contents

2025 6.3대통령선거를 위한
여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

01	여성폭력 지원체계 일방적 통폐합 정책 폐기	4
02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6
03	지자체장 및 정치인 성폭력범죄시 자격박탈 및 성희롱 징계 강화	8
04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보완 입법 및 제도 마련	11
05	친족성폭력 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14
06	성폭력피해자 자립·주거, 노동권 및 학습권 보장	16
07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확대	19
08	성폭력 수사 실무 정비 : 성폭력 무고 조사 일원화, 고소장 재출 안내 명문화, 성폭력 사건 조사 중 역고소 조사 방지 조항 신설, 성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강화	21
09	성폭력 피해자 정보 발급제한 법제 정비	24
10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시 수사 결과 피해자에게 통보	26
11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 개정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배제 조항 신설	28
12	‘성폭력 상담소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추가	30
13	성폭력 재판 시 피해자의 성적 이력 관련자료 사용 제한	31
14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33

15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 열거방식 개정	35
16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법안 마련	37
17	사이버 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39
18	기술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응 강화	41
19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입법	43
20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	45
21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위계·위력·준강간 등 법조 적용	48
22	장애인 피해자 진술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49
23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개편	51
24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실태조사	53
25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55
26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표준화 시스템 도입 및 국가 주도의 지원강화	56
27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 복원	58
28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 실태조사	60
29	미성년자 성폭력 신고 사실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및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 가능	62
30	성폭력피해 아동의 실제 연령 기준으로 법적 책임 부과	64
31	소년 사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66

1. 여성폭력 지원체계 일방적 통합 정책 폐기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예산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
- 일방적 통합을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피해자 지원의 질적 개선 논의

▶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기존 상담소 중 26개소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여 운영을 시작함. 최근 모 정부부처 주관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 간담회에서도 해당 부서 담당자가 ‘통합이 기조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것은 모든 민간 상담소를 점진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민간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그간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무너뜨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정책이나 예산 협의, 구체적인 지역별 실태조사 및 연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복합 피해를 겪은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난 30여 년간 구축되어 온 여성 폭력 지원체계를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이미 복합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해 오고 있어 (한국성폭력상담소 복합 피해 전체 피해 상담의 39%정도, 2023년 기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 지원체계 질적 개선 등이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특별회계인 범죄피해자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
- 일방적 통폐합 정책 폐기 (지자체별 통합상담소로의 무리한 전환 시행 중단)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국회-민간협의체 신설 운영

2.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최협의설 폐기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강간피해는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짐. 2022년 4,765건 강간상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계결과 명시적 폭행협박 없는 강간이 62.5%임¹⁾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인 최협의로 해석함. 여성의 ‘정조’가 법익이던 과거 폐습이 1953년부터 72년간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함²⁾. 대법원은 본 전합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였음. 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음. 그러나 강간죄에서 최협의 폭행협박설은 폐기되지 않았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을 다르게 하고 있음.

1)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21대 국회 토론회’ 발제문, ‘강간죄’ 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외 국회의원 6인,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2) 2023.9.2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공포심 유발 정도의 해악 고지'로도 충분"... 판례 변경,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91516>

- 2023년 UN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부재라는 측면에서 정의할 것을 권고함. 2024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9차 최종견해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강간을 포함한 모든 강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를 기반으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음³⁾

- 2023년 일본은 형법개정을 통해 기존 강간죄를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고, 동의 의사를 형성, 완수, 표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편승하여 성교한 경우 8가지를 나열하고, 부부관계와 유사강간을 포함하여 개정하여 처벌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⁴⁾

▶ 정책제안 내용

-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 상황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

- 명시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실태 및 판례, 해외입법례를 조사 연구하여 반영할 것

- 준강간, 의제강간, 성매매 현장의 성폭력, 무고죄 역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를 면밀히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침 마련

- 부부강간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전·현 애인, 전·현 배우자에 의한 ‘친밀한 관계’ 강간에 대해 처벌의 누락 없도록 체계 마련

3)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CEDAW%2FC%2FKOR%2FCO%2F9&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이는 2년 이내 특별보고가 필요한 권고로 제시됨

4) 2023.9.21. 한국보다 앞서 강간죄 개정한 일본...‘비동의 성교죄’ 들여다보기,

일다 <https://www.ildaro.com/9727>

3. 지자체장 및 정치인 성폭력 범죄시 자격박탈 및 성희롱 징계강화

- 지자체장 및 정치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금고이상 → 벌금100만원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른 수사개시사실 통보가 이루어지면 소속기관 장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 종료 통보)에 따라 '직무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통보하게 규정되어 있었음. 2024년 3월 26일 법개정이 이루어져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도 직무에 관련된 사건 뿐 아니라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건인 경우 수사개시 통보 대상이 됨.

- 그러나 실제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인 경우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개시될 때 통보가 이루어지는지, 이에 따라 직무배제나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함. 직위해제의 결정권자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장이기 때문임. 양성평등기본법에 제31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데, 현장점검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서 직무배제 및 직위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함.

-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6의3항에 따라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6의3항에서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직을 상실하게 됨. 현 경남 의령군수는 기자 강제추행 벌금 1천만원이 대법원에서 2025년 3월 6일 확정되었음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음. 일반공무원 결격사유의 10배 달하는 범죄선고였음에도 직을 유지하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제18조 성희롱 금지 조항과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항이 있음. 누구든지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에 대한 신고접수가 쉽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루다보니 정치적·정파적 목적으로 활용됨.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5명 동료의원 동의가 없어 2025년 3월 무산되었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의회 동료의원 비호 속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음.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른 직영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됨”(헌법재판소 2022헌마1276, 2023.6.29), 일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시 결격사유 기준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임.

▶ 정책제안 내용

-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행위 관련된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신설 또는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를 신설하고, 임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되도록 개정
- 국회 및 지방의회 및 정당 내 성폭력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정기적 공개의무 제도화
- 지방의원 행동강령 실효적 작동을 위한 장치 마련

4.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보완입법 및 제도마련

-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모자보건법」 전부 개정
- 성폭력피해자 임신중단 의료지원 법적근거를 「모자보건법」에서 「성폭력방지법」으로 정정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5항 ‘임신중단’ 표기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9년 4월 11일 「형법」 269조와 270조 ‘낙태의 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위헌 결정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단지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입법 시한을 둠.

‘낙태의 죄’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함. 이와 함께 과거 「형법」 ‘낙태의 죄’ 조항과 연동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또한 현재 법적인 의미를 상실함.

-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 이후 정부는 변화한 법적 상태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와 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확대, 유산유도제 도입, 정보제공, 상담 연계 등 안전한 임신 중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일수록 빠른 시기에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정보와 의료 인프라에 접근하기 어려워 임신 중지 시기가 지연되고 더 큰 비용 부담을 치르고 있음.

-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된 수탁병원 10곳 중 3곳은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기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됨.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1년부터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반증함.

해바라기 수탁병원 35곳 중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지 기술이 가능한 곳은 25곳(71.4%)에 그침. 임신중지 의료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신고 또는 고소가’ 필수 조건으로 둔 기관이 14개 기관이었음. 가해자의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신고 또는 고소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임.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무상 지침인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 업무 매뉴얼 등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안내 사항이 모두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실무상 내용의 변화가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포괄적 성교육,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임신출산, 임신중지,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각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 명시.

- 「모자보건법」을 임신·출산·양육 및 임신 중지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개정.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양육, 임신 중지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권리 보장,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실행 체계, 지원체계, 보건의료 및 관련 영역 연계 체계,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한 조항 명시.

- 성폭력피해자 임신중단 의료지원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에서 「성폭력

방지법」으로 정정. 의료지원 및 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 기준을 ‘낙태죄’ 폐지 이후의 현실 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5항에 ‘임신중단’ 표기하여, 성매매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중지 또는 성매매로 인한 임신중단 또한 지원 범위임을 명문화

5. 친족성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 특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공소시효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은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22년 394건 발생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서는 2022년 전체 상담 중 13%, 2021년에는 15.8%를 차지함.

- 2021~2023년까지 3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중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13.15%(242명)로,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26.79%)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음.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피해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57.36%·74명)이 친족성폭력 피해자일 정도로 신고와 상담은 뒤늦게 이뤄지고 있음⁵⁾.

-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2011년 법이 개정됨.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친족성폭력 피해자 242명 중 38.84%(94명)이 14세 이상이었음. 여전히 10명 중 약 4명 꼴로 사건에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음. 또 이들 중 20명(21.27%)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피해 상담을 받았으나, 나머지 74명(74.73%)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상담 접수조차 하지 않았음⁶⁾.

5)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4년 11월 18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

<https://www.sisters.or.kr/data/report/342>

6) “40년 전 피해 기억은 여전한데, 처벌은 멈춘다?”...‘공소시효’에 막힌 친족성폭력, 경향신문 2024.11.18.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81702001>

- 혈연가족 중심으로 생애 자원이 편중되어 있는 사회에서 정상가족주의를 깨고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가족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임.

- 현행법 상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 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배제가 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함.

- 22대 국회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를 담은 법안이 3개 발의되어 있음. 21대 국회에 법적 안정성, 다른 범죄피해자와의 형평성이 기준이 되어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한 각기 다른 총 3개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배제 또는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됨.

- UN 등 국제기구는 강간에 관한 법적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데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함 (UN인권이사회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A/HRC/47/26, A/HRC/47/26/Add.1, 2021년 47차)),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 국가에는 강간 기소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음.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 특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포함하여 공소시효 폐지

6. 성폭력 피해자 자립·주거, 노동권 및 학습권 보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 확대
- LH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자에 포함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정책을 적용함. 기존 퇴소자립지원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자립수당을 신설하여 시설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이는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1천만원으로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하였음. 이는 보호종료아동에게 2019년 혹은 2021년부터 적용되어 온 지원정책이 4~6년만에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하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 또는 취업이나 대학입학이 결정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 조건을 전제로 함. 만 19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온 경우나 만 19세 이상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경우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임. 보호종료아동 지원 정책에서는 ‘퇴소자립지원금’이 아니라 ‘자립정착금’이라고 명칭 할 정도로 자립 정착을 위해 사회적으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로 확대하였음.⁷⁾ 성폭력피해자 역시 자립정착금 또는 퇴소자립지원금 적용대상과 연령을 확대해야 함.

7)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확대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3347206264>

-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202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자립지원금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입소하고 퇴소하는 19세 이상인 자가 국비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액 시비로 자립지원금을 500만원 지원하고 있음. 전남도 2025년부터 인천과 동일한 요건으로 도비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을 가장 보편적인 범위에서 확대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특별지원의 경우 1년 이상) 입소한 피해자 또는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특례가 적용됨.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신규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만 해당되어 그 수가 희소하고,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어 입주권을 획득하기 어려워 실효성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되지 않음.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고용평등상담실 조사 결과 8%가 직장을 떠났으며, 피해 6개월 이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⁸⁾.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고용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51%였음⁹⁾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이후 피해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후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2차 피해와 불이익 방지가 절실함.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가정폭력)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지원한 통계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2년 이상의 장기보호가 45.7%로 확인되었음. 퇴소 후 거주

8)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보호 및 실효성강화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 2017.7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이용득 의원실.

9) [보도자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이나 이직으로 이어져 부정적 고용효과 발생, 2019.7.23., 한국노동연구원

상황으로는 원가정, 타시설(거주시설, 타보호시설, 정신병원 등) 등 비율이 무려 70%에 달함. 보호시설은 장기보호나 퇴소 이후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에 자립관련한 자원이 미비한 점, 자립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보호시설 내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중요하게 꼽았음. 보호시설을 선택하지 않고 고시원, 거리 등 불안정한 거주를 감수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고려하면 지역사회내 자립지원제도는 피해자 지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임.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누구보다도 일상생활 및 향후 자립지원 등이 중요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시기임.

▶ 정책제안 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자립홈, 사회적 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 만19세이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대상 확대, LH매입임대주택, 장애인 대상의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우선 지원대상자 포함
- 학교, 직장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사안해결 사후모니터링 강화
- 고용평등상담실 민간운영 보장 및 지원
- 불이익 조치 현장점검 및 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불이익조치 금지조항) 위반 시 실질적 처벌 및 후속 조치 이행 등 근로감독 강화

7.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확대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열람·등사 권리 보장제도 확대

(형사소송법 제294조 4의 개정 및 대검찰청 예규 제972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대통령령 제33808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열람·등사권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해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공포(2025년9월19일 시행)됨.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따라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됨.

-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재판장의 재량 및 해석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허가하여야 한다’ 로 제한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 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삭제하여 재판장의 재량 및 해석의 여지 없이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불허 조항은 적시되어 있음)

- 혹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재판장의 재량 및 해석의 여지를 둔다면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피해자 임의 제출 자료(속옷, 의류, 휴대폰 등) 등에 대한 결과 및 검찰의 증거제출 목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

- 현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임의로 제출한 자료(속옷, 의류, 휴대폰 등) 등에 대한 국과수 및 포렌식 결과에 대한 통보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질의 할 경우 수사기밀이라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피해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결과 및 증거활용 여지, 증거제출 여부(누락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기도 함.

- 수사과정에 피해자가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결과 및 증거활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열람 및 등사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이에 <대검찰청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서 피해자의 열람·등사 허용범위가 개정되어야 함.

▶ 정책제안 내용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또는 등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 삭제

- 법무부령 제1081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통령령 제33808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본인 제출 서류 열람·등사 권리 보장

8. 성폭력 수사 실무 정비 : 성폭력 무고 조사 일원화, 고소장 제출 안내 명문화, 성폭력 사건조사 중 역고소 조사 방지조항 신설, 성폭력피해자 권리 고지 강화

- 성폭력 사건과 연동된 무고죄 조사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도록 수사실무 정비
-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고소절차에 대한 안내 명문화
- 성폭력 사건 조사 중 역고소성 무고죄, 명예훼손죄 조사 불가 조항 신설
-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친고죄 폐지 및 검경 수사권 분리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수사 재기 명령이 이뤄지기도 함.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면,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항고,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인데, 만약 경찰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가 이뤄질 수 없어 경찰 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고소 절차 안내를 명문화하고 고소장 제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함.

-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상담·법률·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경찰의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안내가 누락 되어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권리의 존재도 모른 채 사건을 진행하기도 함.

- 수사 지침상 성폭력 수사는 여성청소년계에서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과

연동된 무고는 경제과 내지는 수사과에서 진행하는데, 성폭력 사건과 연동된 무고는 역고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감수성이 필요한 사안이 많음.

그러나 성폭력 사건과 연동된 무고 사건임에도 타 무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청계가 아닌 경제과나 수사과에서 진행하면서,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사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보장된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성폭력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 신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함.

또한 분리되지 않은 수사 장소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받거나, 여성 조사관이 배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인 동석이 불가능한 점 등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함.

- 또한,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의하면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규정에는 없으며 수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속출함. 여기에 더해져 검찰 수사 종결 전임에도 경찰 무고죄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든 사례도 있음.

-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 고소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이나,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 경찰 및 검사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댈 수밖에 없음. 매뉴얼의 취지에 맞게 검찰 판단 전 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경찰청과 대검찰청의 수사 규칙을 통일하고 경찰 수사 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내용

- 사건에 대한 담당 경찰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권리 고지에 편차가 생기

지 않도록 경찰 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권리 고지를 필수로 하도록 경찰수사규칙을 보완하고 경찰청 훈령 시행을 강화

- 경찰수사규칙 제21조 (고소·고발의 수리) 3항을 신설하여 고소장 제출 고지 의무화

- 경찰 실무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수정, 고소장 제출에 대한 안내 명문화

- 경찰청훈령 제1104호 제14조 권리고지 시행 강화

- 성폭력 사건과 연동된 무고죄 수사는 경제과나 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계로 일원화

- 경찰수사규칙 제19조 2항의 5. 카. 신설 ‘성폭력 수사 검찰 판단 전 관련 사건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에 관련한 내용인 경우’

9. 성폭력 피해자 정보 발급제한 법제 정비

- 성폭력 범죄로 인한 민사소송시 가해자가 법원에 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 주소가 노출되어 관련 제도 정비 필요
-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성본 변경 제도 보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서류 열람신청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성폭력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 시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인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폐기되었음. 이러한 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됨.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을 제한하도록 함. 법률이 개정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 거주지를 모를 경우, 피해자의 인적정보(이름, 연락처)만으로도 보정명령을 받아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일선 성폭력상담소 지원 사례 중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으로 형사소송 진행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측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타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나 다시

가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된 상황임.

- 한편 친족 성폭력의 경우 성분 변경에 있어서 부의 성에서 모의 성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모가 가해를 방조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부모 모두 가해자인 경우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모의 성분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성분 변경 친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음.(물론 친부가 반대하더라도 성분변경 진술서를 제출하면 허가 되기도 함.)

▶ 정책제안 내용

- 민사소송시 보정명령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성폭력 관련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 제한

- 성분 변경 시 부모성분 외 다른 성분으로의 변경 제한적 허가 (친족성폭력 포함한 사유명기)

- 성분 변경 시 친부 동의서 불필요 조항 마련 (친족성폭력 포함한 사유명기)

10. 성폭력사건에서 피의자 사망 시 수사결과 피해자에게 통보

- 피의자 사망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사를 지속하여 수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최근 장제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 공소권 없음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법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자체장과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영향력과 성폭력 범죄라는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사를 지속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함.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것은 피해사실을 확인받기 위함인데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더욱 어렵게 만들. 거기에 2차 피해까지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함

- 정다연·한민경(2022)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형사정책 제343권 제2호(통권 제70호), 2022.7)에서 “피의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종결 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내사와 수사의 효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피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사 혹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답변이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 해당 논문에서는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

분 결정 관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국의 피해자 재심사 요구제, 「경찰수사규칙」 개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제안 내용

- 피의자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사유의 불송치에 중요하게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는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공
- 피의자 사망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사를 지속하여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11. 성폭력 신고의무제도 법개정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배제 조항 신설

-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의 의사확인 및 제한적 신고의무 면제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 방지법 제24조(피해자의 의사존중)에 따르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업무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는 성폭력 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해 신고의무자가 피해사실을 안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함.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중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여러 이유로 경찰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본인이 신고하였지만 보호자에게는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사건이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맥락 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미성년자이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의무가 우선되는 것은 심각한 자기결정권의 침해임.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의무만 이뤄지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행정적 절차적 대응을 우선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권리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폭력 신고 의무에 대해 피해자 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신고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가 신고를 거부하고, 신고가 오히려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면책요건 신설도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청소년 방지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피해자의 의사확인 내용 반영 개정

- 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청소년방지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 신고), 제59조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아동·청소년·장애인이 신고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의무는 면제한다는 규정 신설

12. '성폭력상담소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추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성범죄자의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기관으로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4항10)에 의하면 성폭력상담소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폭력상담소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아 성폭력상담소에서 성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함.

▶ 정책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성폭력상담소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기관 추가(성폭력상담소 등)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성폭력 재판시 피해자의 성적 이력 관련자로 사용 제한

-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을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 범죄 재판시 피고인 방어권, 피해자 진술신빙성 탄핵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변호사는 피해자의 sns 사찰 등을 통해 피해자 과거 성적이력이나 친밀한 관계 경험을 피해자 증인신문에 활용하거나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승소 사례’로 홍보하면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시장을 확대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배심원의 성폭력 편견이나 ‘강간통념’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더 극심하게 발생하기도 함.

- 성폭력 범죄 재판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피고인 측이 활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흠집내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성폭력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는 피해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었고, 역시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당시 배우자는 재판에 제출된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개인 sns에 유포한 바 있음.

-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의 이름, 사진 같은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오남용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임.

- 현재 형사소송법 299조에서는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

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 이는 원론적인 규정이지만 재판장이 언제나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정책제안 내용

- 형사소송법 299조 ‘재판장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해야 한다’ 조항, 이를 위반하는 신문으로 확보된 증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재판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 행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성폭력처벌법)

-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성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반영

14.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구성요건을 '성적인 속성의 이미지'나 '성적인'과 같은 표현으로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 관련 여러 조항에서 '음란' 개념과 함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음.

- 피해지원 현장에서는 촬영물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특히 가슴이나 성기 노출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지 않은 이미지와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는 법적 대응은 물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사성행위, 모욕성·명예훼손성 텍스트와 함께 유포된 일상사진,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가해행위에 이용된 이미지, 타인의 성관계 영상 속에 삽입된 피해자의 이미지 등이 있음.

- 반대로 가슴이나 성기 노출 여부가 범죄 성립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실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수치심'이라는 구성요건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다혜·김수아(2018)¹¹⁾가 제안한 “성적인 속성의 이미지” 개념과 김정혜·김애라·박보람·홍남희·정수연(2021)¹²⁾이 제시한 “성적인”이라는 표현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성적인’ 과 같은 표현으로 개정

11)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방안, 형사정책연구원, 385쪽

12) 김정혜·김애라·박보람·홍남희·정수연(2021),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7쪽

15.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 열거 방식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의 ‘촬영·복제·편집·합성·가공’과 같이 열거된 행위 태양을 ‘생성’과 같은 표현으로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과 같이 열거된 행위 태양을 ‘대상의 동의 없이 취득, 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와 같은 표현으로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영상과 이미지의 ‘생성’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기존 성폭력처벌법에서 각각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촬영”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다양한 생성 과정을 거친 경우를 포괄하지 못해 2020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신설을 통해 “편집·합성 또는 가공” 행위를 추가하였음.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촬영·편집·합성·가공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상이나 이미지가 생성·녹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신설된 조항에서도 여전히 포섭되지 못하고 있음.

- 유포 행위에 대한 열거 방식 역시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지 행위 역시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

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지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 링크의 소지 등을 포함하는 방향이 필요함.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피해 촬영물을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열거된 행위태양을 포괄하는 개념 설정을 위해 김정혜·김애라·박보람·홍남희·정수연(2021)과 김정혜·김효정·동제연·민고은·이은심(2024)¹³⁾이 제안한 ‘생성’ 개념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산을 촉진하는 행위”와 같은 대안을 반영하여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의 ‘촬영, 복제, 편집·합성·가공’과 같이 열거된 행위 태양을 ‘생성’과 같은 표현으로 개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하게 전시·상영’,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과 같이 열거된 행위 태양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 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와 같은 표현으로 개정

13) 김정혜·김효정·동제연·민고은·이은심(2024), 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253쪽-236쪽

1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안 마련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 ‘도달’에서 확대, ‘음란성’ 기준 변경 개정
-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내의 ‘성적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등 입법을 촉구함.

▶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한사성 상담통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기타’와 ‘성적 괴롭힘’으로 각각 18%, 15%로 집계되었다. ‘기타’ ‘성적 괴롭힘’에는 동의 없는 성행위 소리·성적 대화 녹음 행위,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칭·성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해킹 등으로 신분증·학력·직장 등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미처 유형화하지 못한 사례들이 포진해 있음.

- ‘기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가해 행위는 지금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 등의 조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적용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임. 이러한 상황은 사이버성폭력을 곧 이미지 기반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경향과 연결됨. 온라인공간의 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성폭력 양상은 다종다양하고 변종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기타’ ‘성적 괴롭힘’의 사례들은 ‘불법화’가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 현상이 존재함을 드러내며, 따라서 이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탐구가 ‘불법화’ 이후의 과제로 설정됨.¹⁴⁾

14) 신성연이,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사이버성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대 폭력 대응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63~64쪽, 2023

- 이러한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법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이 ‘도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 매우 제한적이고, 이마저도 성폭력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음란’ 개념을 다시 활용하고 있음.

- 2023년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스톱킹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2호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게 되나 각각의 법과 방법이 한계가 있음과 더불어 성폭력의 관점에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 부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 ‘도달’에서 확대, ‘음란성’ 기준 변경 개정

-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간 내의 ‘성적 괴롭힘’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련 처벌법 등 입법을 촉구함

17.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국내 등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의 유통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
- 해외 사업자 및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정보통신망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체계 마련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책임을 명문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성인사이트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의 유통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에게 피해촬영물 유통 시장을 운영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는 개별 유포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혹은 4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고 있다.

- 2022년 발생한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유통 시장 전체를 관리·운영한 책임을 묻지 못한 법제도의 한계 때문이다.

- 구글, 텔레그램, 메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2020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실효성이 낮아 법률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은 영상·이미지 형태의 피해촬영물 유통을 넘어, 커뮤니티,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을 경유해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법적 책임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제안 내용

-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국내 등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의 유통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

- 해외 사업자 및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체계 마련

-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책임을 명문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

18. 기술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대응 강화

- 신·변종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범죄자 검거율을 높여 아동 보호 강화
- 피해 위험 아동 조기 발견 및 위기 개입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범부처 및 민·관 협력 중앙컨트롤 타워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고 사건 발생 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전예방·위기 조기경보 체계가 미비함. AI·딥페이크 등 신기술 기반 범죄에 실시간 대응하려면 민관 기술 협력이 필수이며 선제적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조정 기구가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범부처 및 민관협력 중앙 컨트롤 타워 및 융합연구센터 설치
- 정부, 민간 기업,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
 - 정부 주도 또는 민간 주도로 전문가 그룹, 자문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학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 및 법제 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공론화된 다양한 쟁점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환류
 - 수사기법 연구 및 위장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위장수사요원 교육
 - 위장수사심의위원회 운영

-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자 처벌, 정보 공유
 - 범죄 수법 및 현황 모니터링
 - 디지털 성범죄와 연계된 불법 산업 현황 연구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기 아동 발견 및 지원
 - 신종 수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학부모, 교사 등의 대응 능력 강화
 - 성착취 탐지 기술 개발 및 제공
 - 융합연구센터 설치 : 증거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기술 매개 범죄 연구
- : 성착취 산업 규모 실태 조사 성착취범죄자 연구를 통한 재범방지

신 설

제47조의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수사전담기구의 설치)

- ① 국가는 제2 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수사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고 함)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온라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22)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삭제 명령
 - 나. 제25조의 2에 따른 전문 수사의 수행 및 지원
 - 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수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 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수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마.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수사의 수행 및 지원
 - 바. 융합연구센터 설치·운영
 - 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구는 검찰, 경찰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전담기구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정책별 현안분석 연구. 2024. 아동권리보장원)

19.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입법

-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을 통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포괄 입법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처벌 근거 마련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스토킹,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피해를 포괄하고 모든 피해자가 균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화성 오피스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 2024년 한해 언론에 보도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만 20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관련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

-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젠더 기반 여성 폭력임.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차이가 있으며,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한편,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의 구조를 따른 별개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나, 가정폭력,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에 데이트폭력을 끼워 넣는 형태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기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되풀이할 우려가 큼. 엄연한 범죄임에도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게 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임.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한다는 조항, 이제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잔존했던 반의사불범죄 등이 그 예 임. 이외에도 산재한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유사한 법안을 양산하는 것은 여성폭력 근절도,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 보장도 실현하지 못할 우려가 큼.

-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잡는 것이 맞을 것임. 이 경우, 혼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친밀한 파트너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 필요함. ‘친밀한 관계’의 정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넘어 데이트 관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제안 내용

-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을 통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포괄 입법
 - ‘친밀한 관계’의 정의에 전통적 가족구성원을 넘어 데이트 관계 등 포함
 - 스토킹, 강압적 통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 범죄를 포괄
 -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일원화
 - 신고단계부터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 절차 마련,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규정 강화

20.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 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반의 패러다임은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중 0.8%만이 경찰에 신고함.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25,609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4,816건에 불과함. 단 19.8%만이 입건 처리되는 것임¹⁵⁾. 입건 처리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 대비 평균 기소율은 6.2%에 불과함.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15) <가정폭력 수사결과 및 사법처리 현황>_권인숙 의원실, ‘2023년 경찰청 제출자료’, 2023.09.

구분	신고건수 (건)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명)						
			기소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	기타	
			계	소계	구속				
'18년	248,660	41,905	43,576	11,778	355	11,423	16,431	14,689	678
'19년	240,439	50,277	59,472	15,422	490	14,932	21,592	21,228	1,230
'20년	221,824	44,459	52,431	13,100	330	12,770	18,437	19,379	1,515
'21년	218,680	46,041	53,985	16,364	410	15,954	10,507	24,867	2,247
'22년	225,609	44,816	52,146	14,997	496	14,501	9,789	25,319	2,041

- 검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상당수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됨. 2022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52,146명 중 48.6%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약 46.9%는 불처분 되었음. 처분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상담위탁(49%) 및 사회봉사·수감명령(28.1%) 위주. 이에 반해 접근행위금지 0.5%에 불과하고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및 친권행사 제한, 감호위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호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죄명은 상해·폭행 74.6%로 심각한 폭력이 있어도 형사 처벌되지 않고 불처분 되거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되는 것임.

-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해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대신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임.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검사와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음. 이때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준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 한다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8년 상담위탁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석 결과를 보면 배우자의 목을 조른 경우 13.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21.9%,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가 21.6%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위탁 보호처분 되고 있음. 보호처분은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 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해야 함.

▶ 정책제안 내용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을 관계유지·회복이 아닌 피해자 권리보장 목적으로 수정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처벌로 일원화.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절차 폐지
- 보호처분 폐지 전까지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 가정보호사건 송치 시 피해자에게 처분 이유 고지

21.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위계·위력·준강간 등 법조 적용

- 수사기관은 장애인성폭력사건 판단시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 장애인 준강간, 제6조 제5항 장애인 위계등 간음, 제6조 제6항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조항 적극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의 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최근 3년간 (2022년~2024년) 지원한 통계에 따르면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가 80%에 육박함. 그러나 성폭력 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폭행·협박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1항~3항)을 높은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수사기관은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 특례조항 취지에 맞게 폭행·협박만이 아닌 가해자의 다른 행위수단(위계·위력) 및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살피기 위한 법조를 적극 적용해야 함. 위계·위력의 정도를 합의된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 정도로 사소화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항거곤란, 항거불능 상태도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아닌 피·가해자의 불평등한 관계성, 피해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주변의 상황 내지 차별적 환경 등 면밀히 살펴 협소하게 해석되지 않아야 않도록 해야 함.

▶ 정책제안 내용

- 수사기관은 장애인성폭력 사건 판단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장애인 준강간(‘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6조 제5항 장애인 위계등 간음, 제6조 제6항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조항 적극 적용

22. 장애인 피해자 진술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 성폭력방지법 제11조(상담소의 업무) 4항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예의 동행’에 ‘단,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다’라는 단서조항 추가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법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법적 조력 과정에서 ‘제3자’로 칭해지거나 ‘월권’이라는 제기를 받는 등 주도적 참여가 어려움. 특히, 장애인 피해자 진술시 이동지원 등 편의제공의 역할만이 요구될 뿐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각하게 제한됨.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지속적 면담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피해에 이르게 된 맥락과 진술 특성을 면밀히 살피기 때문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관점 및 이해도가 매우 높음. 그리고 수사 기관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피해자다움 통념에 간혀 해석하지 않도록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주요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장애인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됨.

▶ 정책제안 내용

-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수사·법적 절차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성폭력 방지법 제11조(상담소의 업무) 4항 ‘피해자에 대

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단서내용 추가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4항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단,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신뢰관계인 동석한다.’

23.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개편

-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개편
- 성인지 감수성(젠더관점), 장애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별도의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 진술분석가 양성·보수교육에 반성폭력,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장애인권 등의 교육 필수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는 1명의 진술분석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의 타당성 분석 등 신빙성 평가를 하고 있음. 수사기관은 ‘전문성’을 이유로 장애인 피해자 진술을 별도로 면밀히 직접 살피기보다 진술분석가의 ‘진술신빙성 없음’ 의견을 적극 채택하거나 일부만을 협소하게 차용하여 불송치·불기소를 판단하는 경향성이 높음. 이는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에서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지원한 성폭력 사건 통계에서 주요하게 확인되었음.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단 한번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진술분석 의견에만 의존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움.

- 장애인 진술분석의 취지는 장애인 진술에 대해 진위여부만을 가려내어 선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함임. 그러나 장애인의 피해진술은 1회 청취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장애인 진술분석은 최소 몇 회 이상의 면담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젠더관점), 장애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별도의 분석 가이드라인이 필요.

- 진술분석가 개인의 주관적 관점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장애인 진술특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진술분석가의 분석내용에 대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등 공식적 모니터링 단계 필요. 현재의 진술분석 양성과정은 아동 진술 전문성 확보 및 분석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주되게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진술분석가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성·보수교육에 장애인권, 성인지 감수성 등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 필요.

▶ 정책제안 내용

-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개편
- 성인지 감수성(젠더관점), 장애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별도의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 진술분석가 양성·보수교육에 반성폭력,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장애인권 등의 교육 필수 배치

24.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실태조사

-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 개편
- 성인지 감수성(젠더관점), 장애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별도의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 진술분석가 양성·보수교육에 반성폭력, 성평등, 성인지감수성, 장애인권 등의 교육 필수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실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통계나 보고가 부재함.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에 따라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해당 조사에는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실태나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2022.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보면 총 조사인원 9,062명의 응답자 중 장애인은 1.6%에 불과함. 또한 여성가족부는 매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을 취합하지만, 장애인 피해자 파악을 위한 별도의 구분이 없어 장애인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집과 분석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의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함. 따라서 가정폭력 실태조사 시 장애 유무 및 유형을 파악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분리 통계 분석을 통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 필요

▶ 정책제안 내용

- 성폭력 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2항
-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에 ‘장애’ 를 명시적으로 내용 추가
 - 3년마다 실시되는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장애여성 피해실태조사 별도 진행
 - 매년 실시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에 장애 유무 및 유형 파악 항목 신설

25.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비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인원 충원 등 예산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의 지원체계가 매우 미비함.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장애여성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집에 머무르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정도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가장 심각한 것은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전국에 단 2곳 뿐임. 이러한 상황은 당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함.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물리적으로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보호시설이 장애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 시설종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 피해자 지원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 비장애인 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원 충원 등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정책제안 내용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비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인원 충원 등 예산 지원

26. 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 표준화 시스템 도입 및 국가주도의 지원 강화

- 개인공간 마련 등 피해회복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구조적 개선 필요
- 소규모·분산형 보호시설 도입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호시설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의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의 보호시설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지원한 통계에 따르면 보호기간이 1년 이하 38%, 중도퇴소율은 평균 50.9%에 달함. 중도퇴소의 구체적 사유로는 보호시설의 환경적 문제, 쉽터 적용 어려움과 시설 부적응, 공동생활의 어려움, 이용인들과의 갈등, 규율 및 휴대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 물리적/심리적 환경이 59%를 차지하였음. 이는 피해자 지원체계인 보호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가 시설과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닌 보호시설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2024년 보호시설 입소정원 118명 기준으로 봤을 때 1인실은 17개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3개는 최근 만들어진 자립지원 유형 시설에 집중된 것을 보면 보호시설에 1인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함. 심지어 최근 만들어진 13개 제외하고는 1인실 면적기준도 국토부 1인 최저기준 14㎡에도 못 미치고 있음. 2인실 이상의 다인실도 85%~100%가 2001~2014년에 개소인 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우 열악한 상황. 거실, 식당 등 공용 공간도 협소하고 열악하여 전체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음.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시설도 있으며, 심지어 종사자 숙직실이 없는 보호시설도 있음. 사적 공간 뿐만 아니라 편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

용공간의 확보도 매우 절실한 상황

- 개인의 사적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폭력 피해자가 생활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은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심리적·정서적인 갈등 및 어려움을 야기함. 따라서 개인의 존엄성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호시설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인실 또는 개인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설계를 적용하기 위한 국가의 대대적인 예산 증액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격차 및 국가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종사자 배치 등 보호시설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력이 낮은 지자체의 보호시설에 머물 경우,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불리하고 구조적인 차별에 놓이게 됨. 보호시설 간 불균형을 줄이는 방향은 국가 주도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임.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호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보호시설은 추가지원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 필요

▶ 정책제안 내용

- 개인공간 마련 등 피해회복이 가능한 공간으로의 구조적 개선 필요
- 소규모·분산형 보호시설 도입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호시설 간 격차 발생 해소를 위해 국가 주도의 지원 강화

27.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 복원

-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복원 및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
- 장애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예산 증액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청각장애인 학교이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영화상영(도가니)으로 공론화되면서 2013년부터 국가에서 최초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이었음.

- 여성가족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서의 폭력예방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 지자체 수요 감소를 이유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하였음.

- 폭력예방교육은 비장애 학생 참여가 높아 장애학생이 고려되지 않으며, 일회성 교육인 경우가 많음.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시·청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학생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음. 따라서 다양한 장애학생을 포괄하며 지속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이 폭력예방교육, 발달장애인 성교육과의 유사·중복성은 전무함.

- 2024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충남, 대전, 대구, 제주 등 특수교육지원청, 지역교육청, 지역도청, 학교

등 지역의 자체 예산을 적극 투여하여 진행하였음. 무려 108개 기관, 회수는 757회, 연인원 2,442명을 지원하였음.

- 여성가족부의 사업폐지 사유와 달리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는 상당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지역 자체 예산은 지역별 격차 발생 및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교육 진행이 불가함. 따라서 현장의 의견 적극 수렴하여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사업 복원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정책제안 내용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복원 및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
- 장애학생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일관된 정책으로 예산 증액

28.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 실태조사

-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의 강제적인 불임 및 피임시술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수립 계획 명시
-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및 장애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¹⁶⁾은 1970년 국가주도의 인구계획하에 소위 ‘비생산적’인 인구로 규정된 장애인에 대해 생명을 선별해 온 국가의 인권침해 역사가 점철된 명백한 차별 조항임. 그리고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사용됨. 「모자보건법」 제14조 2항 및 3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 친권자와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시) 부양 의무자의 대리 권한으로 동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장애인통계(보건복지부, 2019)에서 학대 피해 상황을 보면 62%가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고, 그중에 여성이 26.5%를 경험하고 있으나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여성의 100%가 본인 의사가 아닌 주위의 권유로 임신중절을 했다고 밝혔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장애인차별예방 정책모니터링 결

16)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여성 중 원하지 않는 임신 중단 경험이 26.2%, 장애 여성과 부부 대상 임신 중단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가에 58.6%가 그렇지 않다, 70.5%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2025년 현재까지도 모자보건법 제14조 허용 사유에 근거하여 정신상 장애로 인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의해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 2025년 3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지적장애여성에게 피임시술을 권유한 사안이 언론¹⁷⁾에서 이슈화되었음.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의 강제불임 및 피임시술 등 성과 재생산권리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음.

▶ 정책제안 내용

-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의 강제적인 불임 및 피임 시술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수립 계획 명시

-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및 장애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

17) <장애인 시설이 피임 시술 권유...“여성 장애인 보호 위해”>. KBS. 2025.3.28.일자.

29. 미성년자 성폭력 신고 사실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 가능

- 의료 행위 및 형사절차에서의 아동 선택권 확대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 10 신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증거채취 가능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13조 법정대리인인 통지 규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경찰 신고 시 2021년 1월에 개정된 ‘범죄수사규칙’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대한 조항으로 인해 보호자에게 무조건 통지하게 개정되었음. 또한 증거채취 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양육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아동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개정 전	개정 후
<p>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p>	<p>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성인으로 한정하며, 통지대상자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성인에 한한다)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대리인등이 가해자 또는 피의자인 경우(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5.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6. 피해자가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성인에 한한다)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책제안 내용

- 법정대리인 대신 법률대리인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 사실 통지 가능하도록 범죄수사규칙 개정

- 긴급성을 요하는 성폭력 피해 증거 채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개정

- 개정안 : 청소년성보호법에 관련 조항 신설

신 설

제25조의10(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 검증의 특례)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검증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의 가해자인 경우
2.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정대리인에 대한 동의를 14세 이상의 피해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참고

[해외 사례]

- 영미권 국가는 18세 미만이지만 충분히 성숙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청소년(sufficiently mature and capable of making their own decision)을 'Mature Minor'로 구분하여 의료행위와 형사절차에서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호주 주 정부의 경우 성착취가 존재했다는 합리적인 확신(reasonable belief)을 가지게 된 전문가가 절차 진행 방식과 보호자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하여 Mature Minor와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아동이 'Mature Minor'라는 평가는 아동의 나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 정서적 성숙도, 지적 능력에 기초한다. 결과적으로, 보건 종사자는 사례별, 건강 사건별로 각 아동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 오스트리아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사회적·법률적 조력인 제도를 두고 있음.
 - '심리사회적 조력'이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절차에 따르는 당혹감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문에 따른 정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하고, '법률적 조력'이란 변호인을 통한 법률적 조언과 절차의 대리를 말한다.
 -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보호시설 등 관련 공인시설과 계약하여 절차 조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당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조력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과 상담, 적절한 사회복지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춤

30. 성폭력 피해아동의 실제 연령 기준으로 법적 책임 부과

- 청소년 성보호법 제3조 실제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들은 연령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또는 수사대상자들을 피해자가 해당 연령 이하인 줄 몰랐다는 진술로 중한 범죄의 처벌로부터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사의 초점도 ‘피해자를 몇 살로 보았는가’에 맞춰지고 있음.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몇 살로 보았는지, 피해자가 나이를 말하였는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아챌 만한 물증이 있었는지 등에 수사가 집중될 수 있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상황을 피하고자 중한 범죄의 법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기소를 회피하게 되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물증이나 상황을 입증해야하는 과도한 입증책임이 발생함.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처럼, 아동 대상 성폭력에 한하여서는 가해자가 몇 살로 인지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아동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출처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정책별 현안분석 연구. 2024. 아동권리보장원)

▶ 정책제안 내용

- 아동·청소년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의 보호권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 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일 경우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p>

31. 소년 사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소년법 제30조 제3항 신설하여 소년사건에서 서류 및 판결문 등에 대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흉악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 않게 심각함. 그럼에도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 절차의 비공개와 관련 정보의 비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해 소년의 처분 결과나 재판 정보를 알기 어려워 피해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함.

▶ 정책제안 내용

- 소년법 제30조 제2항 소년보호사건의 열람 등사에 대한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피해자의 기록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도록 함.

개정 전	개정 후
<p>제 3 0 조(기록의 열람·등사) ②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p>	<p>제 3 0 조(기록의 열람·등사) ②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 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제 2 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 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소년부는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p>

2025

6.3대통령선거

여성폭력분야 정책제안서

발간일

2025.04.30.

발간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함께 만든 사람들

전성협 정책대응팀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혜영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혜란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안경옥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양보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윤애란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이현숙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미화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한선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